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

재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시사항】

- [1]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이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합병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전혀 무시한 채 이를 피인수합병기업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이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합병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전혀 무시한 채 이를 피인수합병기업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공2003하, 198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전문】

【피고인】

【검 사】한웅재외 3인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변 호 인】법무법인 여명외 7인

【주문】

]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6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과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1, 3은 각 무죄.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1